

제391회국회  
(정기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19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 1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 12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 12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 12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 12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 12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 12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 12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 12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 1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 12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 12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1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 12

|                                                         |    |
|---------------------------------------------------------|----|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       | 12 |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       | 12 |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       | 12 |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       | 12 |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       | 12 |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       | 12 |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       | 12 |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       | 12 |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       | 12 |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       | 12 |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       | 12 |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       | 12 |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       | 12 |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             | 12 |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       | 12 |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       | 12 |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       | 12 |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             | 12 |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       | 12 |
|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 | 12 |
|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  | 12 |
|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 | 12 |
|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 | 12 |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 | 13 |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 | 13 |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 | 13 |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 | 13 |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 | 13 |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 | 13 |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 | 13 |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 | 13 |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 | 13 |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 | 13 |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 | 13 |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  | 13 |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 | 13 |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       | 13 |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 | 13 |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 | 13 |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    | 13 |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    | 13 |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    | 13 |
|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     | 13 |
|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     | 13 |

|                                                      |    |
|------------------------------------------------------|----|
|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 13 |
|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 13 |
|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 13 |
|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 13 |
|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 13 |
|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 13 |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 13 |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 13 |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 13 |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 13 |
|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 13 |
|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 13 |
|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 13 |
|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 13 |
|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 13 |
|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 13 |
|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 13 |
|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 13 |
|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 13 |
|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 13 |
|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 13 |
|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 13 |
|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 13 |
|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 13 |
|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 14 |
|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 14 |
|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 14 |
|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 14 |
|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 14 |
|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 14 |
|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 14 |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 14 |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 14 |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 14 |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 14 |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 14 |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 14 |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 14 |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 14 |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 14 |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 14 |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 14 |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 14 |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 14 |

|                                                       |    |
|-------------------------------------------------------|----|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 | 14 |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  | 14 |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 | 14 |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 | 14 |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 | 14 |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 | 14 |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 | 14 |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 | 14 |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 | 14 |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 | 14 |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 | 14 |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 | 14 |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 | 14 |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 | 14 |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 | 14 |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 | 14 |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 | 14 |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 | 14 |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 | 14 |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 | 14 |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 | 14 |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 | 14 |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 | 14 |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 | 14 |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 | 14 |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 | 15 |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 | 15 |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 | 15 |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 | 15 |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 | 15 |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 | 15 |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 | 15 |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 | 15 |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 | 15 |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 | 15 |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 | 15 |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 | 15 |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 | 15 |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 | 15 |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 | 15 |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 | 15 |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 | 15 |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 | 15 |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 | 15 |

|                                                 |    |
|-------------------------------------------------|----|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 15 |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 15 |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 15 |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 15 |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 15 |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 15 |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 15 |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 15 |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 15 |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 15 |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 15 |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 15 |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 15 |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 15 |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 15 |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 15 |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 15 |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 15 |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 15 |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 15 |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 15 |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 15 |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 15 |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 15 |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 15 |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 15 |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 16 |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 16 |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 16 |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 16 |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 16 |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 16 |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 16 |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 16 |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 16 |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 16 |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 16 |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 16 |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 16 |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 16 |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 16 |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 16 |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 16 |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 16 |

|                                                                           |    |
|---------------------------------------------------------------------------|----|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                     | 16 |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                     | 16 |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                     | 16 |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                     | 16 |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                     | 16 |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                     | 16 |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                     | 16 |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                     | 16 |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                     | 16 |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                     | 16 |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                     | 16 |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                     | 16 |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                     | 16 |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                     | 16 |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                     | 16 |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                     | 16 |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                     | 16 |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                     | 16 |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                     | 16 |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                     | 16 |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                     | 16 |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                     | 16 |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                     | 16 |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                     | 16 |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                     | 16 |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                     | 16 |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                     | 16 |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                     | 17 |
|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                         | 17 |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                         | 17 |
|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                         | 17 |
|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                         | 17 |
|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                         | 17 |
|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                         | 17 |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                         | 17 |
|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                               | 17 |
|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                         | 17 |
|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 | 17 |
|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 17 |
|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                        | 17 |
|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                        | 17 |
|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                              | 17 |
|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                        | 17 |

|                                                        |    |
|--------------------------------------------------------|----|
|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     | 17 |
|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            | 17 |
|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            | 17 |
|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 | 17 |

(10시41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86.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74)
87.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소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7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부가가치세법 8번 항목부터 심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0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1000만 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것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발급 또는 결제금액의 1%—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입니다—연간 500만 원 한도로—이 부분도 금년 말까지는 10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특례 우대공제율하고 우대공제한도 이 부분을 지금보다 2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금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언제 이렇게 했어요? 몇 년도에 해서 금년 말까지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09년에 1.3% 해줬는데요. 이걸 3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건데요.

이것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절끔절끔 2년 3년……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계속하든지 아니면 한 5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것 한 2년 지나면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심의하는 것도 시간 보내고 정부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고, 관련되는 기관들 그렇고.

아니,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요, 일몰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해야 국민들이 훨씬 더 예측 가능성도 있고 신뢰성도 확보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불과 2년 하고 또 2년 연장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조세특례를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번거로운 측면도 있는데……

단순 일몰 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년 정도씩 해서 2년 후에 재검토하고, 물론 특히 이런 특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장될 가능성이 꽤 많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감면을 계속 엄격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잖아요, 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이것 2023년 가서 또 기한 연장할 것 아니에요. 아니, 2년이라는 근거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 5년으로 하는 게 신뢰 확보 차원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은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2년 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그런 근거를 남겨 놓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관련되는 질문인데 지금 정부가 정책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직불 카드 확대를 통해 가지고 거래액도 파악하고 소득도 파악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카드 사용률의 목표치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대충 보면 한 60% 이상, 70%까지 올라와 있는데 목표치가 있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

○유경준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 70% 정도까지 갔는데요. 이게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굳어져 가지고요. 저희도 목표는 어느 정도 많이 달성됐다고 보는데 그런 목표와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자영업자 지원 제

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새로운 목표까지 포함해서 목표치 설정이나 정책 효과의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한 번씩 점검하고 체크해 주고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의 세제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 했던 거라면 당초에 양성화 비율이 몇 %다, 50%다, 60%다,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면 사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런 부분은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라고는 이야기……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세특례 관련해서 일몰 연장, 조금 전에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년·2년·3년·5년…… 4년짜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다가 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진짜 특례를 제한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특례에 관련되는 목표 달성을 다 했으면 일몰 종료해야 되고요.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면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자체 평가 또는 심사하는 기구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부처에서 평가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연구소에다가, 전문연구기관에다가 평가를 시키고요.

○류성걸 위원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018년에 심층평가를 한 번 했었는데요. 조세지출비용하고 세수증가분만 비교했을 때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없애야 된다는 결론은 아니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효율을 초과하면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감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정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취약계

충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반대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법 관련해서는 분석적 방법을 요구합니다. 정서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 도와주자 이것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나쁜 사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세요. 비용이 효율보다 더 높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심층평가 결과 보고서에 '다만' 해 갖고 과세표준 10억 이하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중의 32%가 신용카드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 상당한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2016년 기준입니다만 1인당 일반과세자는 136만 원, 간이과세자는 22만 원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이 특례를 만든, 도입한 그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치적이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추는 그런 형태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특법 포함해 갖고 조세지출예산서의 내년도 전체 총금액이 59조대예요. 거의 60조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감면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사사오입해 갖고 거기에 맞춰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세특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특례 일몰 연장이란지 이런 것 할 때 평가가 어떻게 나와서 했다는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맨 처음에 신용카드 도입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세원 양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카드 수수료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목적들이 있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세액공제제도 연혁을 보니까 2000년~2003년도는 개인사업자와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공히 2%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목적이면 지금 헌법에도 보장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당연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입법이라면 퍼센티지라든지 공제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해서 개인사업자와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이런 구분 없이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정책적인 목표가 더 명확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손실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비례적인 것이 되는 거고……

**○배준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이것은 일반적인 거고, 또 이 업종도 보면 물론 소비자 대상 업종에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니까……

**○배준영 위원** 대부분들 다 좀 어려우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어려우신데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매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단들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김수홍 위원** 내년 예산안의 조세지출이 한 60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대상이나 사업을 따지면 겹치고 이래 가지고 그 조세지출의 대상이 수천만 명, 수억 명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매년 조세소위에서나 기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 수백 개 사업에 엄청난 특례적용기간 연장하는 걸 가지고 오늘내일 새로 며칠 동안 분석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것의 어떤 전반적인 편익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올해는 정부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나 추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경제 상황,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층평가 경우에도 의무 심층평가가 있지요? 또 임의 심층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가 정리돼 있으니까 바로 깔아 주세요.

그래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또 일몰 연장은 일몰 연장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 평가할 때도 예산 들이고 인력 들이고 노력 들이고 다 해 놔서 그것은 그것대로 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세액공제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대 공제한도와 관련돼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는 2조 4000억 정도가 되고요. 이 우대 공제한도만 했을 경우에는 8800억 정도 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수감 쪽에서 봤을 때도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초과세수 관련돼서 몇조니 어떻게 하고 이러지만 이런 게 전부 다 모이면 몇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찬성을 하고요. 기재부는 관련되는…… 지금 조특 관련돼서 제일 큰 게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너무나 쉽게 해 준다, 세출예산을 하려면 관련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세지출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볼게요.

차관님, 정부 측에서 신용카드 중심의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것 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세원 양성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세원 양성화인데 결국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용카드 쓰느냐 현금 쓰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가 결정하지요, 그렇지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영향력은 좀 주겠지만 사실은 소

비자가 내가 신용카드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여기 현금영수증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현금영수증도? 그러면 완전히 빠지는 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현금영수증 안 받고 현금 거래하는 것만 빠지는 거고요.

○정일영 위원 그것만 빠지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금도 있지만 주로 신용카드 중심의 소비……

내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내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신용카드 이런 것 세원 양성화하고 관련되는 건데 우리 연말정산하잖아요, 근로소득정산. 그것 할 때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속 축소하지 않았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축소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주로 써라 하는 정책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더 쓰도록 권장하는 정책은 축소를 했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 이것은 계속 더 늘리고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더 활성화하는, 세원을 양성화시키는 정책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지요.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아까 류성걸 위원님 지적도 하셨고 이것도 사실은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방향은 맞습니다.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방향은 맞는데, 그런데 올해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몰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설명이 좀 바뀌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원 양성 이런 것보다는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 드리는 측면이 있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린 질문은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달성이 되니까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류성걸 위원님께서 관련한 사안들을 정리해서 계획과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같이 있었습니다. 참조해서 부처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입 관련입니다.

동 제도는 2015년에 일몰된 제도인데 다시 도입해서 2024년이 적용 기한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정해진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08년도 세법 개정으로 2010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그간의 연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보관하면 단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을 마련하는 등 변경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 당국은 세원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금액에 대해서 별다른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공제금액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액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100만 원 한도로 규정하기로 했고요.

하단 수정안의 100만 원 기준은 2015년 일몰 시점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유사한 사례가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전자계산서 발급할 때 동일한 내용이 논의가 됐었고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3억 원 미만

이런 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의무화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갖는 부담을 인센티브를 줘서 완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제금액 한도 같은 경우는 법률로 상향하자 그런 거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세법 논의할 때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 시행령에 위임을 했으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든지 퍼센티지를 정하든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번에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2015년에 일몰됐던 것을 대상을 좀 늘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법을 다시…… 이거야말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그런 차원이랑은 좀 다른……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됐으면 그걸로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다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아니, 2015년에 일몰이 종료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지금 계속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돼 있는데 그것 범위를 확대하니까 그 범위 확대한 것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아니, 시행령이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서 범위를 3억 이상에서 2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 1년 뒤에 순차적으로 1억 이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시행령도

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근거가 위임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행령이 법을 바꾼다고 보다는 그 시행령 부분도 법에서 위임받은 거고 이번에 공제금액도 시행령에 위임된 거고……

○류성걸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된 그 사항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소득세법 논의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 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 하면서 자영업자 소득과약을 하려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3억 원 했다가 2억 원 했다 차츰 늘려 나갈 건데 그렇게 되니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로서 이 제도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류성걸 위원 보완조치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3억에서 2억, 2억에서 1억으로 가면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시행령에 금액을 위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시행령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왜 특례를 본법에다가 다시 고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임해서 준 것만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면 3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시행령을 고쳐 갖고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지금 인센티브를 주려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의무화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 버리면 되는 거고요. 인센티브를 주려면 법에서 허용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갖고 와서 저희들이……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행령에 위임을 해 줬지 않습니까? 3억에서 지금 얼마로 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일단 2억입니다.

○류성걸 위원 2억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면 끝날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인센티브를 줄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해서……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세 번 네 번 하네요.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 줬으면 시행령에서 3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해서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고쳤다 해 갖고 법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것은 결국은 꼬리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본법을 건드리는, 몸통을 건드리는 형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여기서 만약에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냥 2억, 1억 이렇게 갈 겁니다, 의무화로.

○류성걸 위원 그렇게 가시면 되지요. 왜 다시와 갖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그런데 사업자 같은 경우 내려가는 것들이 더 실효성 있게 가려면 사업자한테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 그게 더 원활하게 가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류성걸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다가 위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하시라는 건데 시행령에서 기준을 바꿈으로 해 갖고 본법에다가 3억에서 2억 됐을 때 그 차액 만큼에 해당하는 대상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항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행령에 위임했던 것을 잘하기 위해 갖고 본법을 다시 고쳐 갖고 인센티브나 특례를 주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김수홍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볼게요.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게 법을 개정해서 세액공제 제도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말까지 적용되고 없어졌잖아요. 제가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없어졌는데 또 시행령에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이 제도는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 새로 제도입하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런데 또 대통령령을 통해서 뭐 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세액공제가 아니고요, 의무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것하고 인센티브 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제도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해 줘 보세요. 2015년 말에 없어졌던 게 왜 제도입이 돼야 되는지, 확대되니까 도입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당시에 저희가 3억 이상 하면서 한 3년 정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 건데 그때 3억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가 전 국민 고용보험 차원에서 또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더 효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걸 정부가 추진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3억을 2억, 1억 이렇게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3년간 줘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입법의 취지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그 적용기간을 이렇게 2년 반만 하면 제도가 정착될 걸로 보는 건가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때 가서 또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때 가서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정일영 위원 또 소위에서 하라고?

어쨌든 이 100만 원 공제한도 이것은 받아들이신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3억을 2억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개정을 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공제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로 올리니까 보는 사람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시행령에 개정할 것은 다 시행령에 개정하면 되는데 왜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시행령에서 개정하냐 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지금 류성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공제한도만 법률로 상향하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들이야 공제한도를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은 원래 저희 원안이었기 때문에……

○김수홍 위원 아니, 의무발급 대상을 3억을 2억으로 올리는 걸 법률에 올려도 되잖아요. 이미 개정했습니까, 정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시행령 그건……

○김수홍 위원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구나.

○유경준 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2억 3억은 말 안 하고……

○전문위원 정명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운 제도, 일몰된 부분을 다시 도입하는데 지금 출발이 114페이지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내년 7월부터 현행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게 출발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 부담이 커지니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

류성걸 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출발이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한 거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으로 서로 다른 법률, 부가가치세법에서 3억에서 2억 낮추는, 발급 의무는 다른 조문인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지금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특례 부분 일몰된 것을 다시 손을 대는 상황이 된 거다, 이게 지금 맞느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100만 원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몰된 제도를 다시 도입했을 때 그러면 공제한도를 어디를 둘 거냐 하는 것은 현행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인데 저희 의견은 이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동의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하고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아마 1억까지도 가야 될 거고 또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금액에 관계없이 사실 전자계산서로 가야 돼요, 기본 방향이. 왜냐 하면 지금 전부 다 IT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미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을 3억 이상 하든지 2억 이상 하든지 1억 이상 하든

지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3억에서 2억을 하든지 3억에서 1억을 하든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낮춰야겠다는 걸 행정부가 공고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1억으로 되고 나중에는 전부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을 시행령을 고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안 하고 법을 고쳐서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특례를 인정할 때 —건당 200원이잖아요—그런데 그 한도를 또 주는 것은 다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일몰됐던 것을 다시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건당 100원 했던 것을 200원 했는데 그것을 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한도를 전체 했을 때 100만 원이 되든지 50만 원이 되든지 200만 원이 되든지 정해야 되고,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제실장,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형태가 있다면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기재위에서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와서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홍보를 못 하니까,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입법부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홍보 얼마큼 했습니까? 시행령을 3억에서 2억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만드

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홍보했습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저희가 이것은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류성걸 위원 아니, 세법 개정안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하고 난 뒤에.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저희가 국세청하고 협업해서 세무사라든지……

○류성걸 위원 그것 어느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그전에 3억 이상이 됐는데 2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홍보를 했습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국세청하고 협업해서 세무사별로 전문가, 세무사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류성걸 위원 그러면 충분히 홍보했다 이것이지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예, 홍보를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홍보했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보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충분히 홍보했는데 왜 또 이렇게 법에까지 고쳐서 이렇게 합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런데 15년에도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인센티브도 줬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15년에 일몰 종료할 때는 그때 당시에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항이 홍보도 덜 됐을뿐더러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분들이……

안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잖아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안 했을 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대상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결국은 한쪽에는 당근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채찍을 가지고 있어서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이미 채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에 일몰 종료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3억에서 2억 원 됐으면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 안 끊으면, 그렇게 사용 안 하면 가산세 무니까 하십시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

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이라든지 관련되는 걸 법을 고쳐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때 법안이……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아주 지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 관련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뒤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이야기한 조세지출 관련되는 사항도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련되는 지원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거지요. 조세지출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다음에 세출로, 예산지출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없이 해 주면 좋다는 식은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정서상으로라든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차 회의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행령 개정해 놓고 법 개정을 하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보고돼서 국회에 보고돼서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순서와 절차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를 또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올해 세법을 마무리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기재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셔서 한 번 정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실무국장 답변이 충분히 홍보를 했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국세청과 관련돼서 협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이미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다시 줍니까? 거기에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제재를 가할 거고 가산세까지 물리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간사님, 명확하게 기한을 정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류성걸 위원 기한을 한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시행령을 언제 고쳤느냐 하면 금년도 2월 17일이예요. 맞지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2월 17일 하고 또 적용기한은 내년 7월 1일부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2월에 고쳤는데 그때 고치면서 충분한 안내나 홍보를 위해서 실제 집행은 내년 7월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시행령이 내년 7월부터 시행입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2월 달에 개정을 해서 했으면 개정하기 전에도 사실 이런 취지로 해서 한다는 것을 기재부에서 보고를 해야 될 뿐더러 그때 당시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세법 개정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컷 있다가 말이지요. 입법부가 그렇게 쉽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다 이거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내년부터 이것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 과정을 잘 해서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보고하고 안내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계류입니다, 계속.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그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음 회의에서 합의의 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관련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제도가 있는데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제외사유가 있고요.

1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예정고지·예정부과가 제외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120페이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정고지·예정부과가 제외되는 금액 기준 상향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 당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예정고지·예정부과에도 적용하자는 개정안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역시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지금 예정고지 제외하고 있는 대상이 징수할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데 이것을 상향해서 징수할 세액 50만 원 미만까지로 더 확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예정고지와 예정부과에도 명확하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확정신고 때 들어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류성걸 위원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1페이지입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간편사업자의 거래명세 보관·제출 의무 신설인데요.

개정안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당국의 원활한 신고 검증 수행을 위해서는 간편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 부분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그런 해외 업체들이 전자적 용역으로 국내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래명세 이 부분을 보관하고 제출하라, 그 부분을 의무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성실 신고할 수 있는 유도적인 장치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 당국의 신고 검증도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는 사안이고 추가적인 내용이라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6페이지입니다.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행정부담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명확하게 국세청장한테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여기서 ‘폐업한 경우’라 함은 무슨 뜻이지요, 박금철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소비세정책관 박금철 보통 국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몇 개의 과세 기간 동

안 계속 안 했든지 또는 국내에 있는 홈페이지가 폐쇄됐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류성걸 위원 사실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사실행위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사실행위를 인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부가 그렇게 사실행위를, 과세관청이 사실행위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게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라 함이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를 이렇게 해 갖고 직권말소할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폐업의 데피니션(definition)을 하위 시행령 같은 데다가 예를 들자면 ‘네 개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 실적이 없다’……

○류성걸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편의주의고,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은 다 맞는 말씀인데 행정관청이 어떻게 사실행위를 전부다 그렇게 판단해 갖고, 나중에 소제기라든지 또는 이의제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폐업한 경우’ 이 규정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고……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경준 위원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폐업의 정의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전문위원 정명호 그 부분은 현행 조문에서 대통령령에서 일부 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업……

○류성걸 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넘길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행정청이 하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조금 전 답변에서 세제실장이나 또 담당 국장이 ‘몇 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뭐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한다’……

미안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유경준 위원 폐업의 정의가 지금 시행령에 정의돼 있나요, 앞으로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 국장이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내사업자 같은 경우에 등록 말소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부가세법에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것을 준용해 가지고 혹시 국외사업자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예시로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것 적용하는 데 그 시행령이 해당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폐업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합의 처리…… 다음번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업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돼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요.

다음 1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인데요.

현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는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과다신고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과도하게 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이 경우에 대해서 과다신고하고 허위신고하고 같은 의미 같은데, 과다신고가 아니라 허위신고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허위신

고라는 게 과다신고를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산세 조문이다 보니 과다신고한 금액의 몇 % 이렇게 매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유경준 위원** 과다신고가 허위신고의 소개념이라 그러면 허위신고로 해서 과다신고와 다른 허위신고도 가산세를 물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신고로 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도 과다신고로 그렇게 맞춰 준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산세가 세목별로도 있고 수습 가지가 되는데 당연히 허위신고 속에는 과다신고가 들어가지요. 또 반대로 매입세액공제 할 때는 과소신고 되는데 이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과다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허위신고로 한 법조항하고 과다신고만 따로 뽑아서 하고 또 허위신고 가산세가 따로 있는 경우……

지금 가산세 관련해서도 보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현재 계산서합계표에 과다신고가 있다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러지만 그게 맞는 건지 오히려 과다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에 허위신고로 해서 지금 현재처럼 전체 신고액에 대해서 0.5%를 해야 될 건지 또는 다른 경우에—여기는 과다신고로 돼 있습니다만—과다신고액에 대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돼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부가가치세 법상 가산세제도는 한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관련되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되는 것,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이런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그룹별로는 같은 가산세율을 주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은 부가가치세(VAT) 세법에 의한 거고 관세라든지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각 세목별로, 물론 총괄국에서 당연히 전체를 보겠지요. 보는데 지금 각 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허위신고 가산세를 할 건지, 과다신고 가산세를 할 건지, 과소신고 가산세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VAT법이니까 그런데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사항, 가산세가 지금 수습 가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목별로 거의 비슷해요.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데 수습 가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위신고하고 과다·과소 관련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 법은 통과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정부가 가산세 신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실제 매출보다 뺄튀기해 가지고 세금 절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신설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업자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세무조사 나와서 과다신고만 뒤져서, 다른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불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던가 하면 과다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과다신고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착오나 선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선의나 착오도 전부 다 악의로 보고 사람을 정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점을 다 법률로 해결해서, 가산세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허위라면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세무조사 나오면 이것 가지고 또 엄청나게 건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2항은 처리하고 관련한 사안들……

○**류성걸 위원** 아니, 이것 처리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세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0.5% 할 건지 과다 또는 과소에 대한

0.5% 할 건지를, 허위신고 가산세로 할 건지 과다 또는 과소 신고·미신고 가산세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전체를 보자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7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과다신고 0.5%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자료는 저희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기재 관련해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미 가산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된 사항에서도 과다신고에 대해서 가산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입법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 취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정비해서 다음차 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유경준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다는 다 허위냐 하는 거예요. 제 질문의 요지 중의 하나가 과다는 다 허위냐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별로 여섯일곱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경준 위원 그러면 허위가 있으면 과다가 허위에 포함……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과다가 단순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유경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만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판매·결제대행사업자 등이 국세청장에게 자료제출하는 시기를 현행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월별 거래명세서

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월별 명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제출 기한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자료제출 의무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결제대행업자 등은 자료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실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그 시기를 잘 맞추자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판매·결제대행업자들이 좀 불편해 하는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크해 봤더니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낸 개정안이라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큰 사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도입 방식은 개정안 하단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되 담배의 종류별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쉐련담배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1%p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황은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하고 부담금 현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기간마다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을 피할 수 있고, 담배에 대한 실질세율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함으로써 흡연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월에 물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내 및 국외 유사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7페이지 고려사항입니다.

물가연동제 도입 국가의 흡연자 비율 감소 폭이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흡연을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고요.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인한 세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계층 간 과세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궁극적으로는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흡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통계를 보면 흡연을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저소득층이 높기 때문에 역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요,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강병원 의원님 안대로 이렇게 연동해서 세율이 올라가면 담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씩 올라갑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 똑같이? 똑같이 비례는 안 하잖아요, 다른 세목이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가는 빼고 세금 부분만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흡연자들이 사는 담배 가격 자체가…… 그러면 담배 가격이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지금 이 법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매년? 그러면 가격이 매년 바뀌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지금 담배 가격은 보통 얼마 만

에 한 번씩 바뀌어요?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지요.

○정일영 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때 2012년인가 2014년……

○정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담배 가격이 매년 올라가네? 매년 바뀌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담배 가격을 올려서 흡연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한다, 나는 이것은 믿지를 않아요. 담배 가격 올릴 때마다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6개월, 1년 효과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방 없어져요. 다 똑같아.

담배 피우던 분들이 담배 가격 좀 올라갔다고, 한 1% 5% 올라갔다고, 물가연동제로 하면 특히 적을 텐데, 흡연을 감소 효과도 없고 복잡하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특히 아까 저소득층 담배 많이 피우신다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쓸데없는 부담을 드리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류성걸 위원 세율을 정할 때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뱃세가 종량세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종량세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가세에 해당이 되는 물가연동제를 붙인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물론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물가 관련해서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서민들, 중산층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종가세에 붙는 물가연동제를 붙여서 담뱃세를 매년마다 연동한다 이 부분은 단순히 금액 자체가 얼마 된다는…… 1%p에 해당이 되는 물가 상승률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단순히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적 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고용진 위원 정부도 지금 반대 입장이고요. 또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들도 반대 입장이고요.

검토의견대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고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 좀 더 여론 수렴하고 의견 청취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입니다.

현행의 경우에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때 원재료 관련 예외가 있는데요.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는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요.

이 부분은 140페이지 주 10번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허가받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에 의해 공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원재료 공제요건 적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 조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개별소비세 공제요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제요건 중에 장소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한 이런 건데 사실 도시가스 같이 직수입이 안 되는, 그것도 어떤 법령에 의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공제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처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해서 굉장히 구체화해서 법률에서 위임해 주시면 대통령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이런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혹시나 특정 물품을 위해서만 이런 형태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랄까, 특혜 시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이게 가스공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도시가스는 가스공사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의 취지는 전력물자 이런 것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직수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다른 것들은 다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가스공사가 직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과세하고 자기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지금 현행 법령을 따르지 못하게 돼 있을 경우에 그럴 때 한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은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세구역을 지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보세구역 지정 문제는……

○류성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특정 품목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검토를 해

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그 지역을 어떤 형태든지, 보세구역으로 정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리고 예외를 인정해 주면, 이것 말고도 아마 다른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개 특정 품목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 놓고 다른 품목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저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주장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게 오히려 형평성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성격상 다른 원재료처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 직접 들어올 수 없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것을 구역을 지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관세법 사항이고 또 관세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 취지 자체가 특정 원재료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원재료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조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는 정부 측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러면 이런 품목은, 가스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주고 하나요, 아니면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다른 나라에서 가스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소비세나 이런 것들을 붙이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개별소비세가 아니라도 다른 세

목에 관련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세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국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구역이 아닌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관세에 관련된 사항은 검토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세제실장이 당연히 하셔야 되고, 차관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관세정책관 또 박금철 국장하고 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하고 또 이렇게 특정 품목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것하고 보세구역 지정 또는 관련되는 것을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금철 국장님이 하시고, 관련한 요청사항을 정리해서 다음번 회의 때 이것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철 국장이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자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해외 사례는 더 조사해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처럼 도시가스를 직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례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현행 제도상 개소세를 원재료 도입할 때 한 번 냈는데 이 원재료를 활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 때 개소세를 또 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류성걸 위원** 국장님, 제가 이중과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유무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중과세 관련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추후에 조정해서 의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42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한 연장 관련되는 두 건입니다.

두 건은 연장 유효기한이 다른데요 윤준병 의

원안은 2025년까지, 정부안은 2024년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왜 폐지법률안 연장인가 하면 2008년도에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도 시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유효기간하고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법률을 통과했고요, 그 이후에 3년마다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유효기간 연장 연혁입니다.

폐지법률 시행일이 계속 연기된 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입되는 특별회계 재원 확보 등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세수 보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기획재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입되는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 법적 안정성 및 조세체계의 명확성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운용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교통시설, 환경개선, 균형발전 이런 특별회계 사업에 이 돈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 새롭게 신설됐는데 그런 부분도 뒷받침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일몰을 3년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이렇게 폐지법률의 시행시기를 계속 연장한 게 혹시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없지요.

도대체 폐지법률을 내놓고 폐지법률 부칙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정

확하게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폐지법률의 폐지법률안을 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폐지법률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 시기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낼 게 아니라 그 폐지법률의 폐지법률 개정안을 내서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전에 세제실장 말씀하신 대로 폐지법률이 도대체…… 그리고 난 뒤에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응기금, 1000분의 70입니다. 그러니까 7%지요, 그렇지요? 다른 기금이라든지 또는 목적세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또는 각 기금으로 세입이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입이 전부 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1000분의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교통특별회계, 에너지특별회계, 환특 이렇게 죽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대응기금이 1000분의 70, 7%인데 관련해서 여기 들어오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1000분의 70 들어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다시 나가서 기금의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만큼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조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조정이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합의는 했는데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개정법률안이 아마 부수법안으로 다 같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특회계 같은 경

우에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부칙 개정을 통해서 됐고요. 기후대응기금도 통과가 됐습니다.

○류성걸 위원 기후대응기금은 여기에서 해 줘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세입 관련된 부분은 본회의 다 통과됐습니다. 환특회계랑 기후대응기금과 관련된 1000분의 칠…… 통과됐고 환특회계도 통과됐고요.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분만 예산 부수법안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 번 더 보고요?

○류성걸 위원 예.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2018년에 연장할 때 그때 연장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것과 달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때는 각 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금의 필요성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은 거기에 기후대응기금까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이것 3년 뒤에 또 연장해 달라는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용혜인 위원 사실은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은 없애는 게 맞는데 이제 사정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몰을 뒤서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은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을 둔 겁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이 폐지법안은 그대로 두고 계속 이렇게 일몰을 3년 뒤에도 아마 또 하실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지금 장담

은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것 장기운용계획 없이는 연장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탄소중립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서 에너지 전환기금의 사용 성격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탄소세법을 발의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존치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분들도,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존치하되 에너지 전환기금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대부분 교통 인프라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 때문에 SOC 투자, 특히 도로에 매년 10조 원 이상씩 쏟아지고 있고, 저는 이 존치 자체보다는 이렇게 건어서 에너지 전환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 대책도 없이 계속 3년 3년 3년 이렇게 연장되고 있고 앞으로 3년 뒤에 또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칸막이 효과라도 없애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밝히고 다음에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목적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됐을 경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연장안이 왔는데 한 번 더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맥주 세율경감 특례기한 연장 관련되는 김수홍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세율경감 특례기한

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상단의 맥주에 대한 세율 변화를 잠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세법상 맥주에 대한 주세는 종량세로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는 1kl당 83만 300원 세율이 적용되고 2021년 3월 1일 이후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1kl당 83만 4000원입니다. 이게 세율 관련되는 거고요.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도록 세율경감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맥주에 대한 세율경감 특례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의 과세표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고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됨에 따라 생맥주 가격 급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두 개정안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맥주에 대한 종량세 시행 직후 생맥주 시장의 종량세 적용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세율경감 정책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작용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두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타당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생맥주 같은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그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생맥주 세율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업체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워 갖고요 지금 해 주고 있는 세율경감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님, 제조업체에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어떻게 해서 판매자들한테까지 혜택이 되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에서도 답변해 주세요, 관련 사항 있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예를 들자면 하이트맥주에서도 생맥주를 통에 담아 갖고 호프집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출할 때 지금 20% 경감된 세율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20% 올려서 판매자한테 가면 판매자는 그만큼 원가가 비싸지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비싸지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특례기간을 늘리는 거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특별한 사안은 없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장을 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딱 적용될 시점에 코로나로 영업제한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기간을 확보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한 번 정도 연장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형수 위원 한 번이면 좋은데 다음에 또 되고 또 되고 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건데……

○소위원장 김영진 그때는 박형수 위원님이 꼭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게 한 번 연장해서 코로나19로 혜택을 보지 못한 걸 추가 지원하는 건데, 전문위원이 여기 149페이지에 써 놓은 것처럼 다른 주류들, 탁주나 일반 맥주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들 생각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생맥주가 어렵다고 해서 도입이 된 게 아니고 이전에 종가세 체제하에서는 이게 리터당 815원이었는데 종량세로 되니까 830원이 되니까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제맥주하고 호프집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2년 동안 경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장된다고 해 갖고 다른 맥주나 소주나 다른 것들과 세율체계가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지요, 하나가 올라가든 하나가 내려가면 그래도 상대가격은 바뀌지요. 상대가격은 바뀌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특례 적용 이후에 그대로 가는 건데 만약에 특례를 없애 버리면 그게 세율, 상대가격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149페이지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다른 데도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만 해당되는 거지, 반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이걸 올리면……

○**유경준 위원** 상대가격이 변하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호프집이나 이런 데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다른 업계는, 캔이나 병은 대체로 큰 제조업체이고 생맥주 같은 게 수제맥주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쪽은 암만해도, 그냥 병이나 캔 만드는 쪽보다는 이쪽이 더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유경준 위원** 아니, 이것 바뀌어서 수제맥주들이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외맥주 수입하는 것과고의 관계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제맥주에서 혜택을 많이 본 거지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종가에서 종량 바르게 한 거니까. 그런데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주류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느냐 하는 거지요. 149페이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탁주나 일반맥주 등.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 국장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입했을 때 생맥주가 제도 전환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경감을 시킨 거고 그때 어떻게 보면 다른 주종은 혜택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고 생맥주가 그때 상대적으로 세율이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맥주 쪽을 낮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20% 경감해서 80%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도는 원래로 치면 생맥주 업계의 적응기간을 감안해서 한 2년을 하고 종료를 해야 되는데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생맥주, 수제맥주 업체 쪽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주종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처음에 저희가 세율 체계를 개편할 때 그 부분도 감안했는데 다른 쪽은 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율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한시적 입법이 아니고 계속해야 돼요. 그 논리면 이것은 한시로 할 게 아니고 계속 혜택을 줘야 한다고. 그런데 2년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 연장하는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과 혜택이 잘 안 됐으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하지요.

○**박형수 위원** 정부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연장을 할 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잘 없었나요?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다음에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사실 그런 사항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1년만 연장했는데 그게 내년까지만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다 한꺼번에 일몰이 도래하니까 내년에 같이 보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있고요. 일몰 연장할 때 최소 2년은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우려를 한 것, 계속해서 연장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유념을 해서 2년 후에 정부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또는 지금의 논리로 하면 특례 입법이 아니고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그 점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의 처리로 하겠습니다.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0페이지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의무 관련 상향 입법입니다.

개정안은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류—미납세 주류입니다—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

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현행 이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서 주세법으로 상향 입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정비하라고 그래서요.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서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거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2페이지입니다.

자구 및 인용조항 번호·문구 정비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문구 정비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특별한 사안 없으면 문구 정비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데요. 이 부분은 조세특례법 개정을 전제로 입법화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고 최종 결정은 조특법하고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동 조세특례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의 20%와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법 4조에서 비과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청년층의 자산 형

성 지원을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와 청년희망적금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조특법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조특법을 먼저 의결한 이후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거기서 개정이 될 경우에 제도를 반영할 건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것은 조특법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159페이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건데요.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통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면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주 3번입니다—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탄력세율)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음 16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2023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는 탄력세율을 통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정기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에 상응하여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되 유가증권시장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2020년 정기회에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하되 그렇게 되면 증권거

래세를 인하하라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24년부터는 인하가 됐는데, 그러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영이 되는데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처럼 계속 가는 건데 지금 법문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증권거래세는 영으로 가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0.15%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뜻이 명확히 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이 법안은 지금 증권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주식이 처음에 태동할 시에 주식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주식을 사치재로 보고 부과했다는 게 사유예요. 그런데 주식을 지금 사치재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투자금융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저는 이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꼭 더 받기 위해서 자주 수정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흥 위원 농어촌특별세로 거둬들이는 게 연간 얼마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6.3조 원 정도 됩니다.

○김수흥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농어촌, 농특회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김수흥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서 어떤 분이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일면 그런 면이 있는데, 농특세 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유경준 위원 아니,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금융소득으로 인정해 가지고 0.2%에서 0.25%까지 과세를 한 거고, 그것에 맞게 시대의 상황이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내에 농특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사치재라서 주식에 부과를 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겠다고 한 건데 지금 주식을 사치재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

니다.

○박형수 위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서 이것을 폐지하면 이 재원을 어디서 다른 데 마련해 놓고 폐지해야 안 되겠어요?

○유경준 위원 아니, 양도소득세를 신설했잖아요, 이번에. 양도소득세 더 많이 받으면……

○고용진 위원 그리고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증권거래세를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2023년도에 농어촌특별세만 남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고용진 위원 그래서 농어촌을 위해서도 필요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결국은 공제기준이 5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세수감도 아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특별히 이런 정도라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로……

○유경준 위원 아니,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단니까요.

○고용진 위원 그때 그래서 그것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기재위에서도 한번……

○유경준 위원 거래세가 줄지 없어지는 건 아니예요.

○고용진 위원 예?

○유경준 위원 거래세는 줄어 들고 거기에 농어촌……

○고용진 위원 농어촌세만, 나머지는 다 제로……

○유경준 위원 아니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지요?

○고용진 위원 줄어들어서 이제 나머지는 제로가 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유경준 위원 아니,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로가 됩니다, 이것은.

○고용진 위원 제로가 돼요. 나머지 증권거래세는 차차……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코스피는 제로가 돼요, 코스피.

○유경준 위원 코스피는 제로가 되는데 코스닥은 아니잖아요.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제 그것을 논하기 시작하면 참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게

2020년 작년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을 유지하기로 해서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원천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일단 정리가 됐었고……

○유경준 위원 아니,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 굳이 또 할 필요 있냐, 여기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정일영 위원 글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넓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년도에 논의해서 결정된 부분으로 그에 따라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지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아, 위원님이요?

○유경준 위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유경준 위원 명확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고용진 위원 재논의하시지요.

○유경준 위원 재논의 한번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한 번 더 논의를 하는데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게 2020년도에 논의했던 사안들에 관한 정리 부분인데 의견이 있으시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농특세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함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6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세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추어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세의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을 도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개정을 전제로 필요한 조치고요, 내용상 부분은 없고 용어상 용어 정비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조세특례 중 관련한 조항에 따라서 그것 먼저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개정하는 거라서 조문 정리까지만 해 놓고 조특법 관련한 사안을 처리한 이후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경준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똑같습니다.

4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65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중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인용조문 정비인데요.

개정안은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인용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을 인용해서 농어촌특별세법 조문도 함께 정비해야 하는 그런 게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3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관세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다국적기업 등의 과세자료 거짓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미제출·허위제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자료를 시정하여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시

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물품 거래 시 구매자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국세의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명령·과태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증명자료의 미제출·허위제출 시에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세관장의 시정명령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미제출·허위제출 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결정자료 미제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강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입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증명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저희가 통상 제1 방법이라고 하는데요—그 거래 가격 방법을 부인을 하고 관세청이 다른 방법을 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많이 얽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단시간 내에 저희가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관세청과 좀 오랜 시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그러면 올해 협의하고 내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논의하고?

○김수홍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증명자료 부분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관세청 앞에 논의할 때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부분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박형수 위원 예, 수정수입계산서.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뭐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언뜻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어 보니까 별로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로 독자적으로 해도 그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전제돼야 된다가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정명호 전제라기보다는 좀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가세법에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이 허위자료나 미제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박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강화한다 뭐 그 얘기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박형수 위원 지금 그 상태로 놔둬도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수정수입계산서를 하다가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제도적인 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 개정안 플러스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그 수정수입계산서 논의와 별개로 이것은 이 자체로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증명자료 제출 관련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도 그 증명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아주 필수적인 자료고 이 증명자료라는 것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가산하는 금액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라서 여기까지 과태료를 갖다가 몇억씩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 관세청하고 좀 이야기 안 해 봤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관세청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청 얘기가 이게 굉장히 좀 여러 조문에 걸쳐 있고 복잡하다고 그래서요.

○류성걸 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정부안인데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 봐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정부가 정부안을 낼 때는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과세가격 결정자료만 냈는데 그런데 전문위원이 ‘이 증명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 이야기는 정부안 개정안에 자료제출 시정명령 위반 시에 2억 원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자료 제출 규정은 2억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리고 증명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류성걸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수정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개정안으로, 서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라고 하는데요—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인데, 하단에 주 보시면 ACVA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ACVA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여 가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현행은 ‘ACVA 신청일 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으로 연장해서 ACVA를 통한 가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관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사전에 심사해 줄(ACVA)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ACVA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까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ACVA

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해당 가산세액을 면제,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에 대해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납세자한테 더 혜택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ACVA라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 심사하는, 관세청에 수출입 이런 업자들께서 미리 좀 문의하는 건데 그때 미리 낸 관세 이 부분을 너무 작게 했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인데 지금은 ACVA를 신청하기 전 단계, 그때 낸 것만 됐는데 지금 그것은 더 넓혀서 그 이후에라도 심사결과 통보 전이라도, 만약에 그 시점에서라도 했다면 그때도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 기간을 확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납세자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말고도 이런 형태로 신청한 날하고 그 결과가 나온 날 사이가 공백이 있을 건데 혹시 다른 데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것하고 맞춰서 해 줘야 될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 ACVA라는 제도가 ‘ACVA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고 나서 결론이 날 때까지 한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심사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좀 빼 주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그게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지 않고에 관계없이 이런 형태가 되면 내가 그림을 그려 보니까 ACVA 결과 통보 전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선의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는데, 혹시 관세가 아니라 다른 세목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과세 대상자에 대한 편의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부분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3항 가기 전에 1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할 게 있어서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박형수 위원 정부에서 1항에 대해 가지고 아까 거짓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에서 다시 또 제출하지 않으면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혹시 차라리 1억 내고 또 2억 내더라도 우리는 제출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출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높이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거래 관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태료 제재를 1억 처음에 하고 2억 또 해도 나는 그래도 제출 안 하다, 그게 더 경제적 이익이다 이러한 사례는 없을까요?

아마 지금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정부에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높이든지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내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 있으시면 다음 최종 의결 때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11페이지 부당행위에 대한 관세 보정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 신청을 하더라도 세관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부당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관세법에 따른 세액변경 신청 절차입니다. 보정 신청은 두 번째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후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관세의 보정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보정제도 악용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의 수정의견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의 보정제도는 명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제42조에도 불구하고’와 같이 가산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보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을 약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의견 주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42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서 더 명료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후에 이 보정 신청을 하는 그사이에 어떠한 불법 사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했다는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뭐가 드러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아니면—이게 약간은 주관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어떤 법률적 판단을 받고 해요? 아니면 본인이 보정 신고를 했음에도 ‘너 이전에 부당하게 했다’ 이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보정 신청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거든요.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신고하고 보정 차이가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붙는데 예는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 아무래도 납세자 측면에서는 좀 엉터리로 할 그럴 개연성도 있고 또 사례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가 밝혀지는 경우에 가산세 붙이겠다는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유경준 위원 동감입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건 부당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다 봤는데 임재현 청장님이 세제실장 하다가 관세청장 하시잖아요. 관세법을 살살이 다 뒤졌더라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몇 개의 관세법 개정 의견을 냈습니까? 지금 25개를 받아들였더라고, 정부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관세청에서 다 건의한 건 아닙니다.

○**김수흥 위원** 아니, 그래도 관세청에서 거의 다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상세해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원래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부당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은 이제 사기, 부정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가산세가 부족세액의 40%가 아니고 부족세액의 10%로 또는 여기서 납세자가 이기면 다시 보정제도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가 아까 뒤 분이 설명하실 때 입증 책임은 관세 당국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 어디 시행령이나 아니면 다른 데 부당한 방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표현할 때는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사기나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위원님, 참고로 14페이지의 주 보시면, 주 11번의 2항이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현행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페이지 어디에 있다고요?

○**전문위원 정명호** 14페이지 주에 있습니다. 주 11번의 2항에 보시면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괄호에 이렇게 일부 내용을 적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고요. 주 12번이 시행령 내용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개정을 안 하더라도 보정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한 방법이면 벌칙을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문은 가산세 관련된 거고요. 개정안은 보정제도에 관련되는 거고, 그 정의는 가산세의 규정에 있는……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보정을 신청했다라도 부당한 방법이 발견되면 그것은 안 받을 수 있잖

아요, 현행 이 규정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보정을 신청했거나 안 했거나.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러한 불법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보정제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예.

○**유경준 위원** 어째서 그렇지요? 부정행위를 했는데 보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잖아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러니까 보정제도의 취지 자체가 가산세를 물지 않고 자진 납세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유경준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부정행위를 해 놓고 보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줘야지요, 그것은.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보정제도 설립 취지상 그 과정에서 6개월 내에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보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그 내용에 그런 게 없는데 ‘신고납부세액 부족,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의 오류 등을 알게 되었을 때’라고 돼 있지,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라고는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11페이지의 현행과……

○**유경준 위원** 예, 그것 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현행에서는 가산세를 붙인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관세 보정할 때 이자 상당액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행위라는 말은 없잖아요.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라는 말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유경준 위원** 그냥 일반 행위지, 신고납부세액의 부족이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의 오류를 알게 되었을 때지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를 못 붙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유경준 위원** 아니, 붙일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면 보정 신청 자체를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전문위원,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유경준 위원** 안 들으셨어요?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보정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유경준 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 부정행위라는 말은 지금 11페이지 현행법에 없잖아요, 하나도.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가산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정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전문위원 정명호** 그래서 12페이지의 마지막 본문 보시면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시에 가산세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보정제도는 부족세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이것은 관행일 뿐 아니에요, 그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보정제도에는 가산세라는 게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보정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산세를 붙이는 건 좀 뭐하니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만 가산세를 붙이겠다……

○**유경준 위원** 알겠어요. 그것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가산세를 붙이는 게 아니고 보정 신청을 아예 안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보정 신청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부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는 모르는 거고, 일단 받은 다음에……

○**유경준 위원** 아니, 어차피 입증책임이 관세청에 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정 신청 자체가……

○**유경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돌려보내면 되지요, 보정 신청 안 받겠다는 의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형수 위원** 보정하고 수정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봅니까?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다 보정으로 봅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요, 수정하고 보정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보정은 국세에는 없고 관세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요. 수정 신고는 5년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애는 짧은 기간 내에 하게 돼 있고 자발적인 오류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꽤 오래전에 들어갔는데 자발적 오류시정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안 매기고 그간의 이자만 매기는……

○**박형수 위원**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보정과 수정의 차이가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면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의미의 보정이라는 것은 사소한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의 것을 보정이라고 그리고 수정은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을 수정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러거든요. 보정이나 수정이 그런 개념이라면 이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기간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다 보정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보정 안에는 사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행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6개월 안에 했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이게 맞는데, 그런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간단명료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제가 ACVA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ACVA도 사실은 관세 세액을 확정을 하려면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ACVA도 결국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건데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ACVA의 경우에도 사실은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에 본인은 과세가격을 아는 거예요. 100원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서 80원 해 가지고 80원 납부를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심사 결과가 곧 나오는

데 이거 100원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그사이에 100원으로……

아까 내가 표를 그려 놓은 게 신고 납부가 A고 그사이에 ACVA 신청하고 난 뒤에 결과 나올 때까지를 A'라고 한다면 그사이에 하면 이 경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정 신청의 경우에도 이렇게 된다면 ACVA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ACVA는 지금 현재 그냥 면제하도록, 아까 이야기대로 B-A', 여기에는 B-A의 10% 가산세 감면하도록 했는데, ACVA의 경우에도 신청하고 난 뒤에 결과 발표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사이에 다시 A'라는 금액으로 하면 (B-A')×10%의 가산세가 면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정 기간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ACVA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서 국내 한국GM하고 미국의 모회사 간에 거래가 있지 않겠어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는데……

○류성걸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면 이 수입하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전가격 결정인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6까지 방법이 있는데 1 방법을 썼다, 2 방법을 썼다……

○류성걸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ACVA의 경우에도 사실은 악의를 가지고 결정 신고 납부를 80원을 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여기 ACVA는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가지고 관세청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류성걸 위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고 납부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신고 납부를 협의하면서 80원을 신고 납부해 가지고 관세를 납부를 해요. 그런데 ACVA 신청해 놓고 보니까 ACVA 결정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게 100원으로 날

가능성이 많아서 ACVA 결정 나기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한다 그러면 가산세가 면제가 돼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가산세가 면제돼요,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가산세 면제하고 하는 거니까……

○류성걸 위원 ACVA에 그게 가산세가 면제돼요. 그런데 이쪽의 보정 관련해서 보면 거기에는 허위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 이제까지는 보정을 전부 다 해 줬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정의 경우에 성실신고하려는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성실이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아까 내가 실장한테 여쭙봤던 게 그런 경우가 있나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두 가지가 아까 100원이고 80원 했지만 금액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정 제도를 악의로 또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면 ACVA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런데 이 ACVA는 어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제가……

○류성걸 위원 알겠어요. ACVA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ACVA를 신청하고 난 뒤에, 그때 신고납부를 80원 하고 난 뒤에 방법을 이렇게 죽 할 것 아닙니까? ACVA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나는 생각에 80원이라 하고 신고납부했어요. 관세 납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ACVA 신청을 해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내가 했던 방법으로 하면 80원인데 사실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100원으로 해야 되는데 80원으로 일단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ACVA 신청해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 100원으로 나오겠거든요. 그러면 그사이가 1년인데 그때에 다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안 묻다는 게 ACVA의 본질입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류성걸 위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요 제가 지금 현재 제2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관세 당국에서 달리 볼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2 방법을 통해서 신고납부했는데 이것을 제4의 방법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것 불안하기 때문에 관세청에 협의를 넣는 겁니다. ‘제가 4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4 방법으로 하려면은 관세청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해 갖고 ‘그러면 당신네 거래의 특성상 이것은 4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걸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악의를 가지고 내가 작게 속이고 있다가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요.

**○류성걸 위원** 알겠어요.

실장님, 제가 제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보정신고와 ACVA의 유사성과 또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걸 봤을 때에 ACVA가 그렇게 해서 적은 가격으로 계산했던 방법, 방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100원으로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해 놓고 하는 경우고 보정신고도 마찬가지로요. 보정신고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사소한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걸 악용해서 관세를 적게 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악의로,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ACVA도 그런 악의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매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 지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보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금액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ACVA는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정신청은 이미 금액은 확정돼 있는데 일부러 과소 신고한다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보정신고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을 ACVA로 신청을 해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는 보정 신고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ACVA 신청했다는 이유로 안 물게 돼 버리면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ACVA도 그렇게 악용할 때는 가산세를 물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보정신고도 그런 형태의…… 보정신고라는 것은 상당히 선의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이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서 성실신고를 안 하고 사실 완전히 허위로 신고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가산세를 안 매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을 만들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 장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제도라든지 또 규정하고를 항상 서로 대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충분하게……

**○유경준 위원** 그리고 제가 정리만 할게요, 1분만.

**○소위원장 김영진** 예.

**○유경준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을 명확히 하면 12페이지에 주 10이 있고 그 앞에 해당되는 것을 명문 규정은 없으나 보정제도의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집행을 해 왔다는 건데 이 관행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가산세 부과하는데 법 없이 가산세 부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경준 위원** 아니, 보정이 아니고 이것은 사기행위니까, 부정행위니까 보정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면 된다는 거지요, 아까 한 말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보정신청을 했는데 그건 이제 받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유경준 위원** 예, 어차피 입증책임이 관세청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정행위로 발각이 되면 ‘너희들 것은 보정을 해 줄 수가 없다, 가산세를 내라’ 이렇게 하면 현행법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길래 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다 논의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제가 관세국장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보정제도에서 보정의 어떤 계기는 신고납부 세액의 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지 그 사실이 불법이나 부정에 연유하는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면 신고납부인이 부정한 의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보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제재하겠다……

○**유경준 위원** 아니, 한 얘기 또 할 필요가 없고요,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보정을 안 해 주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것은 법문의 해석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유경준 위원** 부정행위라는 게 없는데 지금……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정제도는 당해 납부 세액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발동이 가능한 것이지 그 이유를 묻지를 않거든요.

○**유경준 위원** 이유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유를 왜 안 묻냐는 거지.

○**고용진 위원** 아니, 보정을 할 때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예.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과소 신고할 때만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과소 신고해 놓고 뭔가 이게 발각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 보정신고해서 더 내겠다 이런 경우지요, 이게? 그런데 그 앞에 그런 부정한 방법, 여기에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붙이겠다 그런 거지요?

보정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과소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내겠다고 할 때 이미 과소 신고할 당시에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을 썼으면 거기에서 가산세 물려서 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현재로서는 보정제도가 자발적 납세 오류의 시정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정신고를 이 케이스는 과소 신고했다가 자기가 다시 바꾸려는 경우잖아요. 이미 과소 신고하는 단계에서 뭔가

부당한 방법을 택했다, 이 부당한 방법이라는 게 근거가 있냐, 주관적 해석이 혹시 들어갈 소지가 없냐 그런 건데 법령에 규정된 무슨 뭘 과채했다든지 허위 증명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걸렸을 때 해당하는 거예요, 가산세를 내는 것은?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를 하고 보정신고를 했을 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물린다 이 취지를 법안에 딱 규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논의의 집중점은 그러면 처음부터 보정을 받아 주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관세국장님이나 당국에서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용해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이기도 하니까 진행하시지요.

○**류성걸 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보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오늘이다 이러면 보정신고라고 하는 보정이라는 말은 그 기간 자체를 늘려 줘서, 6개월이면 6개월 지금 하잖아요. 그 6개월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신고하는 것은 다 본래 신고로 봐 준다는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허위가 있든지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든지 다시 가려낸다면 보정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보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적으로 원래 오늘날까지 해야 되는데 6개월까지 하는 것은 무슨 저거 있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보정을 다시 해 갖고, 기간 동안에 부정한 방법이 있다 하는 말은 그것은 보정제도 자체가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ACVA도 마찬가지로요. ACVA도 아까 이야기했던 게 처음에 했던 방법 중에 어느 방법, 모르지만 그 가액을 결정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일단 하고 난 뒤에 그 최종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보정이라는 것도 본래는 오늘날까지 내 갖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정제도가 없다면 오늘날까지 확정해 갖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정이라는 그 자체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 갖고 보정을 해 갖고 납세를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거기에다가 가산세를 매기

면 아까 ACVA하고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경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나 실수로 해 가지고 한 거는 보정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하라는 거고 그런데 그 보정기간에 한 거라도 그런 정상적이거나 실수가 아니고 부정한 방법이였다 그러면 보정제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지요, 그게.

○**류성걸 위원** 보정신고가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 신고인가요?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를 해야 되는 신고가 있고 신고하는 자체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가 있어요. 이 신고는 무슨 신고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후자입니다.

○**류성걸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후자.

○**류성걸 위원** 신고하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신고는 보정을 하라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뭐 사위를 했든지 또는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사항…… 보정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제도가……

○**유경준 위원** 그러면 보정신고하면 그게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관행적으로 안 가렸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보정신고하면 무조건 다 받아 줘야 돼요, 6개월 내에 하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장님, 보정신고의 취지가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일단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납세자가 생각하기에 ‘아, 내가 좀 과소신고를 했네’ 그러면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주겠다는 것……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 보정이라는 게 그 사이에 보정하면 법률행위가 확정이 되는데 당초에 했던 그 시점으로,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고기간 내에, 보정신고하는 기간의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차후에 더 내는 경우에, 지금은 가산금이 없어졌지만 기한 도래 이후에 내는 이자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가산금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유경준 위원** 아니 아니, 명확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전문위원이 해석한 것 12

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있는 것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시에 가산세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보정제도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류성걸 위원** 그러면 보정제도를 없애야 돼요. 보정제도라는 게 관세법에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확정신고를 딱 해야……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다음에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허위로 했든지 하는 것은 처벌하든지 가산세를 매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보정기간이라는 것은 관세는 이게 다른 일반 내국세와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때까지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진짜 말하여 보정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준 위원** 보정을 하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왜 보정기간에……

○**류성걸 위원** 나는 보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소위원장 김영진** 잠깐만, 뭐냐 하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실은 보정 건수가 6만 7494건이고 보정 세액이 1조 7571억 원이에요.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그런 사인을 주는 거지요, 사실 실제로.

만약에 이 보정신고 기간에 허위로 과소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릴 수 있으니 그 보정신고 기간에 정확히 하라는 그런 규정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는 일반적인 부분들을 법에 넣는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적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는데 실제로 대단히 많은 건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허들을 주는 법안이라고 보고. 이 조항이 없으면 과소신고로 보정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거나 가산세를 못 물린다는 게 판단이라서 지금 이 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박형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보정신고 제도라는 걸 둔 제도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의 차이만 있다 그러면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보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냈을까, 그 의미가 단기간 안에, 6개월 내에 보정신고를 하면 고의나 과실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보정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류성걸 위원님대로 보정제도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거기다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 처벌하는 걸로 하면 뭐하려고 이 규정을 두겠냐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신고서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정 제도를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이것은 빨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신고를 하면 그러면 과세 당국도 편하잖아요.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단기간을 주고 이때 신고하는 것은 부당함 이런 걸 따지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정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그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보정신고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류성걸 위원 말씀하신 이 취지까지도 여기 포함돼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이것 넣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류성걸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이 보정 제도가 관세법에만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왜 그러냐 하는 취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첫째.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가산세라는 것은 그 기한 내에 허위, 과다, 과소 그다음에 미신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가산세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지나고 난 그 뒤에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금을 부과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놔어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신’ 이자상당액이라는 게 바로 가산금이에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가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납부기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있고 난 뒤에 보정기간

이 6개월이면 6개월 이후에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을 안 하고 가산세를 매기는 건지 아니면 보정기간 6개월까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 묻겠습니다.

관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있잖아요, 오늘이예요. 오늘 이후에 매기는 게 가산세라고 한다면 6개월까지의 사항이 가산세라고 한다면 6개월이 납부기한이예요, 맞습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련해서, 가산금이 우리 국세에는 없으니까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으로 합시다. 그러면 납부기한이 오늘인데 6개월까지 보정기간을 둔다고 하면 그 6개월까지의 매기는 세를 가산세라고 한다면 보정기간이 도래해 갖고 되는 그 날짜를 납부기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보정기간을 6개월을 둔다면 납부기한은 이런 형태로 해 갖고 가산세를 매긴다면 납부기한 6개월이 도래해서 종료하는 날이 납부기한이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것은 납부기한하고는……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왜냐하면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납부기한 이후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산세를 그 기간에 부과한다는 것은 명시적인 법에 의한 납부기한이 오늘이 아니고 보정기간이 끝나는 6개월 뒤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런데 가산세라는 게 납부지연이라든가 이런 데도 매겨지지만 또 다른 의무 위반에도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다른 경우 매겨지는 게 뭐가 있어요? 가산세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자료제출을 안 했 다든가 그것하고……

○류성걸 위원 자료제출을 안 했 다든지 하는 것은 이 본세를 매기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안 한 경우에 가산세를 물린 거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이자상당액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낼 때는 이자상당액인데 그게 가산금이에요.

지금 가산세를 매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의견 한번 김수홍 위원도 말씀해 주세요.

○김수홍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실장님,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소신고하고 나서 보정기간에 당사자가 보정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본인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아니면 정당하게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의 서류를 내는데 그게 과세 당국에서 이것 봤을 때 이걸 받아 준다, 안 받아 준다 이러면서 보정이, 교정이 돼야 그게 보정의 의미가 있지 자기는 열심히 해서 정당한 세액공제라든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과정이 없이 과세 당국이 나중에 당신들 부당하게 보정신청해서 허위의 서류나 뭘 냈으니까 가산금을 내라고 하면 그 당사자는 수용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이 보정제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거꾸로, 반대예요. 지금 김수홍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 이야기예요. 왜 그게 그런 의도에서……

이유 불문하고 보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보정신고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잠시만요, 지금 논의를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부당한 방법에 대해서 조항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 방법만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한해서만.

○류성걸 위원 보정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여기도 보정제도가 여기에서는 성실신고하려는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에 의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보정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보정제도 자체가 한 번 신고하고 잘못해서 또 가서 신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라고 한 거고 이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부정한 방법은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렇게 정확히 규정이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 보정제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좁혀서 예외적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한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은 저는 정당한 조항이고 그것이 없이 하는 것이 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유경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정을 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야 되고 보정기간을 둔 게 이유 불문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용납해라, 수정신고를, 보정신고를 받아들여라 하면 류성걸 위원님 말대로 되는 거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부당한 방법으로 보정신고했으면 안 받아 주면 되는 거라고……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처럼 하면 보정신고하고 수정신고하고 차이점이 없게 돼 버려요. 왜 보정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 놔느냐라면, 그러면 이게 명확한 법률 규정 취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정신고가 있고 보정신고를 6개월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그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했더라도 용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우리가 추적해 갖고 할 것 같으면 수정신고서 제도만 놔두면 돼. 그래서 6개월 안에 하든, 5년 안에 하든 간에 추적해 갖고 부당한 방법이라면 징수를 하면 되는데 6개월이라고 그 기한을 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을 한다라면 그것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라면 거기다가 부당한 그걸 추가를 해 버리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저도 이 법 취지는 명확하게 좀 돼 있는데요. 이것 한번 좀 더 논의하지요,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요.

○유경준 위원 예,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한

뒤의 검토의견에 보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뒤에 16페이지 관련한 의견도 한 번 더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의 이 말을 보면 전체적인 취지가 전혀 어긋남이 없는데 지금 서로 이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이것은 또 논의하고 다음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근거 상향입법입니다.

개정안은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근거 상향입법이고요—이것은 56조이고—62조는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근거 상향입법입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세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재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에 따른 관세청장의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 조사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상향입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덤핑방지관세 등 재심사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서 이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뒤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형식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뭘뭘을 포함한’ 아니면 ‘등’ 이래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에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관한 의견을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정을 수용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22페이지입니다.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용도세율 적용 시 현행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 부분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요.

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세법 제83조에서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하단의 대법원 판례에 보시듯이 용도세율은 적용 요건을 갖춘 이상 세관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도세율 적용과 실제 운영이 유사한 감면제도의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을 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특별하게…… 문구 수정이라서……

○류성걸 위원 이게 대법원 판례가 2011년 5월 13일 날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 관련 돼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개별 사건으로?

혹시 관세청에서 오신 분 계세요?

○관세청심사국장 이종욱 관세청 심사국장 이종욱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례가 여기 적시돼 있는 것은 2011년 5월 13일 날 선고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개별 사건으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나요?

○관세청심사국장 이종욱 많지는 않고요, 예외적으로 몇 건 정도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몇 건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몇 건밖에 안 됐으면 그냥 가는 것하고 또 그사이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모양이지요?

○관세청심사국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에서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성걸 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불편함이나 또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형태가 돼 있다면 빨리 해소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꼼꼼한 관세청장이 가시면서 법안이 많이 왔습니다. 오래 지난 것 다……

(웃음소리)

다음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인데요.

현행 조문을 보시면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그러니까 후자인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주체가 정부만이냐 하는 건데요. 실제 관세청은 수입주체와 상관없이 경호 물품인 경우 면세를 허용해 오는 관행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 거기 관행에 맞춰서 명확하게 조문을 우측처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조문 명확화 차원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 부분은 분리를 해 갖고 명확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용어라든지 또 형식에 있어서 이것 한 개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에다 아마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삼아서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하고 또 불일 것은 불이고 또 용어 같은 것은 그렇

게 하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김영진 추후 찾아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7페이지 개인의 소액 자가 사용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김주영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현행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용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유사한 취지로 200만 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29페이지는 현행 조문을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31페이지의 상단 내용은 환급대상이 아닌 200만 원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우편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송품장과 통관목록·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직접구매를 한 소비자가 특송 또는 우편방식으로 반품하려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관세청은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반품 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세 관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사실상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하단에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환급을 확대하자는 취지

가 되겠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 중에 환급대상 금액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제도 내에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해서 탄력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우리 해외출장이나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뒤에 자료가 다른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면세 한도액이 600불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술 한 병하고 담배 한 보루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그걸 금액을 좀 올리자 이렇게 하면 해외는 이렇고 또 다른 예는 이렇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개인 소액 자가사용 물품 반품 시에 관세 환급 대상을……

이게 지금 현재는 한도가 얼마로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600불입니다. 면세 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성걸 위원 아니, 면세 한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해외직구……

○류성걸 위원 지금 한도를 200만 원 이하로 처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외국에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에 면세 한도가 600불이라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소액 자가사용용품의 반품 시에 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는 얼마 정도 되나요?

국장님!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죄송합니다만 해외 사례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왜 제가 여쭙보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고 하면 다른 나라에도 지금 해외직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해외여행 시에 면세 금액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 금액을 얼마로 올리자, 낮추자 이렇게 했을 때 해외 사례를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소액 자가사용용품에 대해서 관세 환급 대상 확대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해외 사례는 검토를 안 했다니깐…… 200만 원 그냥……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말씀 주신 그 취

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살짝 다른 게 이것은 해외직구를 할 때 150불 아래까지는 지금 면세입니다. 그런데 150불보다 더 많이 갖고 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반품을 했어요. 그러면 반품을 했으면 자기가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환급받는데 지금은 보세구역에다 선반입하고 신고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 절차를 약간 바꾸어 줘서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류성걸 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 절차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관세, 국민들이 직구했을 때 돌려주는 거니까 좋은 제도로 생각은 돼요.

그런데 한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직구를 한 경우 1000달러까지 나중에 반품한 것 수출신고 생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관세 면세가 되는 게 얼마예요, 직구했을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150불입니다.

○정일영 위원 150불? 그게 150불이 연간이예요, 1회예요? 이게 어떤 제한이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건별입니다.

○정일영 위원 건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1년에 10건 하든, 100건 하든 150불 이하로만 하면 상관없네요? 맞아요? 아닐 텐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포장 뜯지도 않고 해 갖고 다시 팔고, 국내에 지금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정일영 위원 공항의 보따리상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반품한다, 그게 지금 환급대상이 우리 수정의견에는 2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1000불, 이게 관세가 아니고 상품 가격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수입신고 가격……

○정일영 위원 예, 상품 수입신고 가격…… 그러니까 정부안에서는 지금 수정의견을 다 합해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생각은 수입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시

행령이나 다른 데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은…… 이게 해외직구들이 주로 달러 표기지요? 어떻게 되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수입할 때요?

○정일영 위원 예, 직구할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 하려면 직구할 때 원화로 환산을 해야지요.

○정일영 위원 원화로? 그러면 중국 같으면 중국 화폐 위안화를 원화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지침에 의해서 1000불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 1000불, 그러니까 1000달러를 이렇게 하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다르게 규정이 돼 있나요, 중국 화폐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지금 현재 관세청에서 수출신고 없이……

○정일영 위원 누군지 얘기를 하시고……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관세제도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입가격은 달러 베이스로 하고요, 수출물품은 보통 원화로 하는데 지금 현재 관세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1000불 기준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1000불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 돈으로 다시 정해서, 그게 중국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역산하나요? 어떻게 하지?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것은 아마 중국……

○정일영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2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우리 원화 베이스로 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달러로 한다 그러는데 또 달러도 완벽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지금 달러와 원화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수출신고 없이 반품이 가능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하 중에서도 1000불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수출신고 없이도.

○정일영 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반품

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하 중에서도 1000불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수출신고도 없고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000불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 금액대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는 없어도 되는데 환급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불과 200만 원으로 이원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와 환급 제도를 동일하게……

○정일영 위원 맞춰 주겠다……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동일한 선상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합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 다 끝났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예.

○류성걸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끝났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관세법에 직접 규정이 돼 있나요, 600불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시행규칙에 600불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관세법에 금액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 아까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형태의 금액이 바로 명시돼 있는 관세법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법률 규정 말씀하시는 것……

○류성걸 위원 관세법 법률 규정……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아까 시행령으로 간다는 것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상당히 플렉서블(flexible)하다, 어쨌든 조금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바꿀 가능성이 없으면 법에 명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야 대국민 관련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얼마 바꾸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관세법의 다른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법에다가 명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는 정부안으로 처리하고요. 만약에……

○류성걸 위원 아니, 정부안으로 처리하지 말고……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있는 경우 확인한다……

○류성걸 위원 이것을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류성걸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관세법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관련된 규정이 얼마 만에 바뀌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2013년 9월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2013년이면 8년이나 지났네요.

관세법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크게 시행령에 놓아서…… 자주 바뀐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대국민 홍보나 또는 효과 차원에서 보면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수정해서 의결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의견을 확인해서.

○유경준 위원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건지……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말씀하신 것, 정부안에는……

○유경준 위원 200만 원 포함한 것?

○소위원장 김영진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유경준 위원 전문위원이 올린 것?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은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이 아니라 정부안으로 하고 류성걸 위원님께서 그것이 다른 관세법에 명확한 금액으로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잖아요.

○류성걸 위원 한번 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다.

다음 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내·선상 구입물품의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 중 입국 시 자진신고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구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9년 정기회에서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으로서 입국 시 자진신고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관세법에서는 기내·선상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 시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내·선상에서 구입물품은 환불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내 또는 선상에서 판매한 물품 역시 일반 면세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문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환불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 및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항공·선박업계 안내 및 집행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를 위해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형평성 문제인데요. 지금은 600불 이상 사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냈다가 다시 물건을 환불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데, 지금은 면세점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비행기에서 사면 돌려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게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면세 범위가 아까 규칙이라고 했는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게 법률 근거 조문이고요, 실제 내용은 또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그 조문을 저희가 명시해 놓은 겁니다.

○류성걸 위원 예, 그래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 제도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시내·출국장·입국장·외교관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되고 있는데 기내·선상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기내·선상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돼요? 많지 않을 텐데.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거의 발생 사례는 많지 않고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관세청장님이 꼼꼼하게 보셔서 틈을 찾으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 전 사전통지 생략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재수출감면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재수출면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수출면세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재수출면세를 통해 감면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즉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수출감면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의 즉시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장이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는 재수출면세의 즉시징수는 포함되어 있으나 재수출감면의 즉시징수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재수출면세와 즉시징수 측면에서 사실상 성격이 동일한 재수출감면에 대해서도 즉시징수 사유 발생 시 과세 전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재수출면세와 사실상 성격이 동일한 재수출감면에 대해서도 즉시징수 사유 발생 시 과세 전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의하여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43페이지입니다.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행은 구매대행업자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요, 우측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정의에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하여 세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을 포괄하여 정의·규제하려고 하는데 관세법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정의가 위임형 구매대행으로 한정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관세법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쇼핑몰형 구매대행을 관세법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의규정을 위임형 구매대행에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6페이지는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요즘 구매대행 형태들이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정의가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어서 쇼핑몰형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자구수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위임형 구매대행하고 쇼핑몰형 구매대행하고 차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임형 구매대행은 이용자가 다른 회사한테 ‘이걸 좀 구매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외국에 가서 그것을 구매를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위임형이고 쇼핑몰형이라는 것은 쇼핑몰이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살 수 있는 물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회사가 그것을 이용자 명의로 수입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 자체를 업자가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구매하는 자로 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구매대행이라고 했을 때 구매대행사의 이름으로 수입을 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구매대행이 고요. 쇼핑몰형은 정보만 제공하고, 정보를 홈페이지에다 예를 들어 ‘무슨 구두’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서 주는데 수입하는 소비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로 수입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설명 듣고 나니까 궁금한데, 그러면 직구는 보통 무슨 물이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직구는 대행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알리바바에서 사고……

○정일영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요즘 어디 그게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비자가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형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구매대행인 거고요.

○정일영 위원 그게 구매대행이예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쇼핑몰형……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 쇼핑몰형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쇼핑몰형이예요.

직구도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설명을 드리면, 직접구매는 내국인이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정일영 위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물품을 구매하는 걸 직구라 그러고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우리나라 쿠팡에 가서 외국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의 사업자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직구를 직접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몰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거기서 사 가지고 DHL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주고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꽤 있잖아요. 그것은 쇼핑몰이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만약에 내국인이 미국에 가서 현지 법인을 개설해서 거기서 쇼핑몰을 개설했다면 그것은 직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직구로?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이렇게 정의를 명확화한다고 하지만 법이 상거래의 분화를 전부 다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법에는 구매대행업에 관련된 규정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다, 위임형 구매대행이다 이런 걸 전부 다 꼭 따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유형이라는 게, 이것 말고도 또 나오면 또 바뀌야 되고 하는데 구매대행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게 어느 규정에 나오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약관이라는 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한테.

구매대행이라는 걸 해 놔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매대행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구매대행도 있고 한테 그것을 우리가 법에 따라서…… 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바뀌면 우리 법 바뀌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실 때도 본인도 아직 구매대행이라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라는 게 입에 안 익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매대행이라 하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입법 취지는 여기서 일부러 유형을 정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사람한테 연대납세의무라든지 관세포탈죄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규

정 적용을 잘 안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포착하려고……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오히려 구매대행업체라고 하는 포괄적 정의만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관련되는 조항은 시행령에 하든지 시행규칙에 하든지 또 더 하이어라키(hierarchy)로 내려가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실익에 관련된 사항을…… 법에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크게 구매대행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유형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구매대행 양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관세국장이 잠깐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한 실무상 이유 중의 하나가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매대행의 형태 자체를 법률에 규정을 해 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구매대행 행태가 있는데 ‘나는 지금 현행 관세법상의 구매대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실무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각종 구매대행의 양태를 구분해서 자세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법에 구매대행을 정의하고 그 세부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양태로 바뀔에 따라서 법을 또 바꿀 거예요?

○**전문위원 정명호** 위원장님, 제가 소위 자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19년 정기회에서 구매대행업자와 관련해서 구매대행업자와 화주의 연대납세의무,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관세포탈죄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을 개정했고요.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사업자는 유예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

행 규정 19조의 구매대행업자의 정의가 그러면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실제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관련되는 구매대행업체의 양태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에서 위임해 가지고 부령으로 정하든지, 필요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양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법 고쳐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결국 이게 정의를 하는 과정인데 류성걸 위원님 말씀은 혹시 또 뭐가 새로운 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지한 건 1호고 지금 새롭게 2호를 추가하려는 건데요. 그러면 3호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은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뭐가 났든 하여간에 앞으로 발생할 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만들어 봐서 그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돼요. 법률을 그렇게 만드는 게 어딴어요?

○**류성걸 위원** 위임형 구매대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표준약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한 건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임형이라고 쓰지는 않고요 그냥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여기서 기술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위임형, 무슨 형, 쇼핑몰형 이렇게 여기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 뜻을 여기다 그냥 담아 놓은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 뜻을 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3호에다가 기타 뭘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포괄위임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열을 하면서 뭐뭐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호로 나누면서 그렇게 따로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있어서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경준 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뭐뭐뭐 등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여기서 위임형 이렇게 문장을 안 쓰기 때문에 다 풀어 써야 돼요. 다 풀어 쓰고 풀어 쓰고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현행에도 사이버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1항 2항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적용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행을 좀 약간 구체화해서 풀었던 상황이고, 류성걸 간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후에 위임형 구매대행 아니면 사이버몰 아니면 제3의 무엇이 나타날 경우 새로운 구매양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건데 그것은 나타났을 때 다시 수정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걸 예측하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면 전자에 말했던 구매대행업자들의 납부 회피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져 나가는 부분들을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장 관세 당국의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용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류성걸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현행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개정안에 넣는 거니까요, 개정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3호를 해 가지고 무슨 대통령령 하면 이게 뭐는 정하고 또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게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보니까 법 개정 2년 이렇게 자주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게 나타나면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요. 법체계가 맞아야 되니까요.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의 사이버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된 양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이버몰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몰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구매대행의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이버를 통한 몰이라는 이런 취지로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행에서 요청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종류나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사이

버몰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령으로 두 개를 합쳐서 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규정은 그대로 두고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아니면 ‘자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지금 얘기한 구매형을 나열하고, 쇼핑몰형을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관세국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지금 결국 계약의 양태가 중요한데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법률 양태가 사실 지금 보면 위임형에서는 위임계약 그다음에 쇼핑몰형에서는 매매계약인데 이 두 가지 계약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다만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약간의 기술적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간이나 양태의 변화는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쇼핑이라든지 구매 관련되는 사항이 수시로 지금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정부는 참 답답한 얘기 하네요. 법률로 규정하자고 위원들이 하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하고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하면 찬성을 해야 되지, 대통령령으로 하자는데 왜 그것을 법률로 하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 내용과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고 있는 거라서 다음번에 1항 2항 부분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장님, 지금 좀 상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포괄적 위임이 안 되게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해 주시지요.

○류성걸 위원 그래요, 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1항 2항 하고 3항에 그것을 넣어서 포괄적 위임이 안 되는 형태로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1항 2항 하는 게 아니고 기존으로 하고, 1항 2항 하면 포괄적 위임이 된단니까 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래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세법 항목부터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딱딱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우편물 통관 규정 명확화인데요.

제258조의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제81조의 간이세율에 대한 적용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241조에 따른 신고’, 하단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고가 두 가지입니다. 241조 1항에 따른 일반수입신고와 241조 2항에 따른 간이신고 또는 생략인데요, 두 조문에서 의미하는 게 241조 1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자구 정리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우편물 통관 관련 단순 규정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정비 사안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적 신고 의무의 중복 조문 정비인데요.

관세법에서는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세관장 신고 및 현장확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역하려면’이 맞기 때문에 중복 규정 하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중복 규정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 정리로 합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3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원양어선용 어로용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관련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세관장의 하역·환적 허가 대상의 선박에 원양어선을 추가하고 원양어선의 외국 물품을 적재허가 물품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원양어선에 필요한 선박용품과 어로용품이 적재허가 대상에 규정되지 않아 통관 절차 이행에 따른 원양어선사업자의 불편 및 환급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에 준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원양어선용 선박·어로 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필요한 것 같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선박용품과 어로용품이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관절차 이행을 다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0페이지 통관제한 인용법 정비입니다.

인용법을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타 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을 불허하는 것 외에 통관을 일시적으로 보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통관보류 근거를 법률에다 상향해서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길 위원 잠깐만요.

오늘 관세청에서 나와 계시지요?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예, 그렇습니다.

○류성길 위원 직·성명 말씀해 주시지요.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관세청 통관국장 서재용입니다.

○류성길 위원 지금 관세법 관련해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관세청 내에서 일선 세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할 때 필요한 지침, 예규, 통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 내부 직원에 대해서 하는 훈령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시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류성길 위원 제가 왜 여쭙보냐 하면 국세청도 그렇고 사실은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법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세법 관련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훈령, 예규, 통칙, 지침, 고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 전체 목록을 좀 주세요. 목록을 주시고, 기재부에서는 그중에서 법규 사항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규정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아까도 내부 지침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향 입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제실장님, 지난번에 국세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관세청하고 해서 첫 번째는 전체 목록을 좀 주시고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5항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6페이지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련 제도의 상향 입법인데요.

현행에 보시면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인데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1항부터 11항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조문 신설을 통해서 해당되는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AEO 심사의 법적 근거를 상향 입법하려는 개정안은 예비심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AEO 신청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비심사제도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73페이지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상향 입법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는 AEO 혜택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EO 혜택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법률유보원칙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및 개정안은 AEO 혜택을 통관절차상의 혜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통관절차와 무관한 AEO 혜택이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역시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전문위원의 수정 사항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다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상향 입법입니다.

현행은 임의적 취소사유로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공인 심사요청을 거것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AEO 공인 취소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법률유보원칙 차원에서 적절할 수 있고, 공인 취소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82페이지 하단에 간단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 역시 상향

입법 사항이고요, 자구 수정은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고시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고 255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두 가지 경우를 수정의견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조문 분리 및 정비 관련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하나의 조문에 함께 규정된 AEO 사후관리, AEO 공인 지원사업 및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보다 이해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조문 분리 및 정비 사항으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조문 분리 및 정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라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83쪽의 개정안 중에서 우리 한글맞춤법에 이런 식의 한글맞춤법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전부 다 다 붙여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꺾쇠를 하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이것을 전부 다 붙여야 되나요? 본래는 하나의 법률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꺾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실무적이고 또 용어의 맞춤법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약에 띄어 쓸 경우에는 꺾쇠로 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 주고.

○류성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법제처 심사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법제관들이 진짜 고생을, 다른 우리 행정부에 계신 분들도 직원들 다 고생하고 힘들고 한데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법, 세법도 그렇고 다른 법도 보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요즘은 일본식 표기다 해서 ‘지불’하고 ‘지급’하고도 이런 걸 해 가지고 법 한 건 개정안을 내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요? 법률 자구 또는 표기에 관련된 특례법을 한 개 만들어서 그 법에다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은 거기에다가 일괄 특례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전체로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나중에 이것을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다음 단계 법사위에 가면 자구 정리를 하는 게 법사위의 권한이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구 정리라든지 또는 체계 관련된 사항들을 잡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대로 가면 우리 그대로 통과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 차원에서는 행정부 차원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국회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는 법사위의 전문위원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관련된 것을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법규 특례의 자구 관리 관련한 방향들을 잘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국제우편물 사전정보 제출 의무화 관련 정부안인데요.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사전정보를 제출하고 사전정보 미제출 우편물의 반송, 사전전자정보 제출 시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이 있고요,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입니다.

개정안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우편물의 반송을 요청하고 제출 시에는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이야기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전자정보는 우편물 발송국 체신관서가 우편물 수신국 체신관서에 해당 물품의 적재 전까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2021년부터 개정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간에 사전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제우편물 수입 시 통관우체국이 우편물 발송국 체신관서로부터 제공받은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사전전자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우편물을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사전전자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우편물을 반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체신관서로 하여금 사전전자정보 제출의무 준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94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때는 세관장이 통관우체국장에게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 우편물목록 제출요구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한테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관에서 위험물품의 선별 정확도라든지 통관관리 효율성을 통해서 국민안전 강화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조문 수정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국제우편물 관련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선박화물이든지 항공기화물이든지—선박 중에서는 화물선 포함해서—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세청에, 세관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세관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예.

○류성걸 위원 그 조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적재화물목록을 입항이나 출항 시 관세법에 따라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세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마약이라든지 불법 총기류라든지, 도검 등 흉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관련되는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그런 어떤 우편물로 운송되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선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사전전자정보 수령 없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그 물품을 반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쪽 출항지 국가에서 적재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그 물품에 관한 사전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고요.

국제우편물하고 특송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경우가. 특송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지금 오지요, 우편물은 안 오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드리도록 할까요?

○정일영 위원 지난번에 관세청이 문제가 많아서 JTBC에도 나오고 해 가지고 인천공항 세관에 내가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특송화물 파트하고 국제우편 파트하고 건물이 다르고 따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급하게 봤지만 내 기억에 특송은 물품 리스트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것, GHB, 물뽕이라는 것 말이에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있는 그런 걸 단속을 잘 하던데 국제우편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내 얘기가 맞나요? 누가 좀 아나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현재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우편물목록을 사후에 제출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우편물 뭐라고 그러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EMS.

○정일영 위원 국제우편물이 우체국에 도착을 하면 반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오는 데까지는 우정본부 직원인가 거기 직원이 하고 거기를 딱 통과하면 관세청 직원이 또 체크하더구먼요. 그런데 관세청 직원이 하는 것 보니까 이쪽 특송 파트는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던데—리스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국제우편물은 리스트가 없고 하는 게 좀 엉성해 보이던데,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엑스레이도 그렇고요.

내 기억이 맞지요? 몰라요?

현장을 나만치 모르는구나. 아니, 내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국제우편물이 구멍이 뚫릴 수가 있겠구나, 마약 이런 것이 들어오는 데. 그리고 직원들도 인원이 적고 장비도 좀 부족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기재부하고 관세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막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니까. 그런데 이게 리스트가 있어야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때그때 이상한 것은 딱지를 붙여서 빼내고 구식으로 하던데, 자동 분류가 안 되고. 일단 이 개정안은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사전전자정보가 세관장한테 안 오면 그 우편물을 반송하는 것은 세관장이 반송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체가? 세관장이?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맞습니다. 반송할 수 있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구나.

현재 그 정보가 우편물 발송국이 아니라 받는 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냈다면 우리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그쪽에 오잖아요. 그 우편물 받는

때까지는 지금 정보가 오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세관장한테 안 오는 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만국우편협약에 의해서 사전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받으니까 그 정보를 세관장한테 공유시켜라.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가…… 같은 국제우편물 취급소인지 하여튼 공항 옆에 있던데 거기 우편물취급소, 국제협약에 따라서 체신관서 거기까지는 오는데 이게 세관장한테는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관세제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전통관정보는 저희들이 57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정보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세관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발송정보입니다. 해당국에서 적재하기 전에 그것은 해외 우정연합 국가들끼리 받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관에서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지금 받고 있는 사전통관정보하고 발송정보를 합쳐서 사전전자정보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발송하기 전에 그 정보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예, 그런데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 정보가 체신관서에서는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만국우편연합에서 제도가 마련이 돼서 각국이 지금 국내법에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아니, 이게 개정은 필요한데 현실이 따라가는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발송하기 전에 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발송한 다음에라도 도착하기 직전까지 오면 되긴 되는데 지금은 발송하기 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송하기 전 정보가 지금 체신관서까지는 오는 것인지, 그런데 세관장까지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신관서도 안 오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누가 해 주면 좋겠는데.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위원님, 관세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통관국장 서재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정보가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물품 내역하고 물품하고 직접 확인해서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부분 만국우편연합 협약이 우선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물품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먼저 엑스레이를 돌린 다음에 저희들이 한 2% 정도만 체신관서에 대해 가지고……

○정일영 위원 국장님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것 알고.

지금 정보가 체신관서까지는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지난해 만국협약이 개정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법 다 안 다니까.

그런데 그 협약이 발효됐는데 하여튼 체신관서까지는 발송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재 받고 있나 하는…… 관세청 입장에서 체신관서까지 왔는데 체신관서에서 안 줘서 이게 맞는 건지……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신관서에서도 국제협약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받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그렇습니다.

아까 관세제도과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 두 가지 정보 중에서 발송 정보는 못 받고 있고 통관 정보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받고는 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관세청통관국장 서재용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현장에서는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근거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관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서 변경된 사안들을, 사전전자정보 제공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한 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통관질서 관련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완화입니다.

개정안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시 신고의무 위반, 외국물품의 환적 및 사람 이동 시 신고의무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한편, 입항·출항 허가 신청 전 세관장의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고의·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출항허가 신청 전 세관장의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를 불응하는 경우에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시 신고의무 위반, 외국물품의 환적 및 사람 이동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시양륙 신고 및 환적 신고 등은 통관질서를 위한 규정이므로 위반 시 행정질서벌의 하나인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입항·출항 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시 고의·과실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상이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에 대해서는 입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시와 달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법 위반 행위에 비해서 처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법적 수용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박형수 위원님이 나중에 전문적인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완화가 바람직한 건지 적정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데 처벌 수준을 완화한다?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벌금으로 했을 때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에요. 그래서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의 종류가 한 여덟 가지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지요? 과료도 당연히 형벌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완화해야 된다, 완화만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행정부 내에서 할 때에 법무부라든지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나요? 법무부 의견 들어 봤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이것은 관계부처 의견조회할 때 법무부에도 다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법무부의 어떤 결과, 의견……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이견이 없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에 문서로써 의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소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봐서 관세법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단순히 그냥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이것 저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관님,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말씀 주신 대로 벌금은 행정형벌인데요, 저희들 보기에 지금 이 성격은 질서위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질서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타당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다른 세법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질서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게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벌금이 형벌이기 때문에 기준 이런 게 다 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무부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성걸 위원 예.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지금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사항 중에 일시양륙이나 외국 물품의 환적, 사람의 이동인데 이게 일시양륙이나 환적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이나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잠깐 들렀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관세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그런 우범성이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질서벌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용어 문제인데—전문위원께서 표현할 때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그리고 ‘2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완화’함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금액이나 벌금에서 과태료로 하기 때문에 완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적정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적정한, 적정 수준으로 맞게 했다, 과태료 수준도 그렇고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꾼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96페이지에 표현을 완화라고 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 정명호 전환의 의미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냥 서술적으로 쓴 거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벌금에서 과태료로……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라는 말……

○전문위원 정명호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환한다는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류성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님이 법무부나 법제처로부터 관련한 의견을 문서로 가능할지 한번 판단해 보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

번 회차에 논의할 때 얘기해 주시고 그때 논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예.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1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00페이지입니다.

보세운송업자들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보세운송업자들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세운송업자들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등록제도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여 통관질서를 제고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는 보세운송업자들의 유사업무 종사자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보세운송업자들과 유사한 업무 종사자인 특허보세구역운영인, 국제물류주선업자 이런 분들도 모두 명의대여 금지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세운송업자들도 그렇게 맞춰서 형사처벌 조항, 벌칙규정을 신설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다른 법률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법률에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유사한 관세사법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제물류주선업자 이것은 물류정책기본법인데 여기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나는 징역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게 행위가 가볍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가볍다고가 아니

라 지금 영업정지들은 다 있는데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벌칙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맞춘 겁니다.

○박형수 위원 벌칙규정을 만드는데 벌칙규정을 벌금형으로만 할 것인지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인데,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이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징역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그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거기에 가깝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물류정책기본법의 국제물류주선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관세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상 관세사보다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이런 쪽에 더 가깝다고 봐서 그쪽으로 맞춘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국선대리인 조문을 신설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국선대리인 선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의 권한·자격·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관세 쟁송과 관련하여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 국선대리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사유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내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국선대리인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관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세, 지방세와 달리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납세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내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제 필요성의 요청이 제한되는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권익보호 차원에서 관세 분야 국선대리인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국세청에도 이 제도가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있습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요건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보유재산 5억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개인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리고 신청세액 자체가 소액입니다. 신청세액이 한 3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화주들 경우인데 실제로 발생할 건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화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요.

○유경준 위원 아, 개인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박형수 위원 기업이나 법인이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박형수 위원 지금 국선변호인 제도를 채택하면 결국은 국가가 국선변호인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거두어서 위반한 사람한테 구제를 해 주는 경우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법 위반하는 사람한테…… 물론 형사법적으로 있지만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자기 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는 다 자기 책임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으로 인한 것인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해 준다? 이게 과연 타당한 입법 방향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흥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에 있어서 소송이나 이게 국세에 있어서 소송과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개인이 불복하는 건수가 연간 한 10~2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수흥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국세나 지방세에 비해서……

○**김수흥 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성 제기는 누가 했어요? 관세사협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화주나 수입업자 측에서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제가 알기로는 관세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나름대로 그렇게…… 물론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 혹시라도 불이익 부분, 억울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김수흥 위원** 관세청은 다른 데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고 이렇게 해서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관세청이 제도 도입을 의뢰했다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소액이나 이런 데서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관세청이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행정적으로 낭비가 많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서 그 사람이 법률적인 요건을 딱 정리하면 관세청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대야 되느냐? 그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청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국선변호인까지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선정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의 취지는 영세한 수입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또 해외 사례도 봐야 되고……

어떻습니까, 해외는 혹시 어떤가요? 이런 국선대리인을 관세청이나 이런 데 도입한 사례가 있단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해외보다도 국내에서 국세청이라든지 조세심판원 이런 데서, 아

무래도 기관들 자체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안은 좀 더 논의……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저도……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시고.

○**정일영 위원** 원래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관세 여기는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렇게 하면서, 국세청에 국선대리인이 있는데 이게 지난 2014년 12월 23일 날 법제화가 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은 국세청 국선대리인도……

어느 법에 돼 있나요? 보니까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혹시 국세기본법에 들어가 있나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국세기본법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처음에 국세기본법에 도입될 때의 도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논의할 때 같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또 추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국선대리인 관련해서 시급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안 자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한 사안들도 그렇고, 또 해당 사안들이 아까 12건 정도 이렇게 해서 구제하거나 도움을 줘야 될 대상자들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진행해도 무방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110페이지입니다.

보세관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세관매장별 매출액에 관하여 보고하는

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실제 관세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고 있고요, 저희 행정실에서도 의  
원실에 3월 말까지 송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세관매장 매출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세관매장별 매출액 보고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115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보세관매장 매출액 보고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 보세관매장 특허를 내실  
있게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관신고 매출액과 기업  
회계 기준 매출액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이 보세관  
매장 매출액 보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야 되  
는데요, 12월 결산법인들이 보통 3월 이때 제대  
로 된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이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시  
면, 한 1개월만 주시면 저희들이 더 풍부한 정보  
를 기재위에 보고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또 그것을 동시에 보고하라 그러는데 저희  
들은 그냥 4개월 이내에 풍부한 정보를 한꺼번에  
드리면 모든 게 다 충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 상임위에 계속 보고했습니  
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  
니라 언제 보고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아까 전문위원도  
받아서 의원실에 다……

○류성걸 위원 언제 보고했나요?

○전문위원 정명호 금년 3월 말에 위원회로 왔

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실 메일로 다 송부를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게 형식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보고가 아니  
잖아요. 그냥 이메일로 죽 썬 주는 게 보고입니  
까?

법에서 보고라는 것은 이것도 행정행위고 법률  
행위예요. 그런데 문서를 썬 주는 그런 형태의  
보고는 준법률행위의 하나의 통지든지 알아서 해  
라 하는 이런 건데, 그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안건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  
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까지 그렇게……

왜 제가 기억이 없느냐 하면 보고받은 적이 없어  
요. 기억이 없어요. 혹시 위원님들 기억나시나요?

○정일영 위원 아니요.

○류성걸 위원 전연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형태가 되  
는 거예요. 그냥 이메일 한 개 보내고 그냥 문자  
한 개 보내고 이런 형태의 보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세법 제176조의2가 언제부터 발효가  
됐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2013년입니다.

○류성걸 위원 2013년 이후에 어떤 형태의 보고  
가 이루어졌고 또 상임위에 어떤 형태로 최종적  
으로 자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정 위원님 말씀……

○정일영 위원 이게 꼭 4개월 이내로 필요하다  
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같은데, 저도 아까 류성  
걸 위원님처럼 이 보고서를, 이 보고를 책자로  
각 의원실에 돌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못 봐 가  
지고……

누가 알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제가 확인하기로는 메일로  
저희한테……

○정일영 위원 메일로?

○전문위원 정명호 공문까지 왔는지 확인해 봐  
야 되는데요.

○정일영 위원 차관님, 보세관매장별 매출액 이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보세관매장별 매출액이라  
는 게 면세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 밖에 또 있나? 면세품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에서 판매장별이라는 게 기업, 신라·롯데·신세계 이렇게 회사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면 세점·공항면세점 그런 판매장별 매출액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판매장별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판매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시내·출국장·입 국장·지정·외교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정일영 위원 다 구분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본점, 어느 점, 어느 점 해서 그것까지 했는데 매출액이니까요 매출액이 어떻게 됐느냐……

○정일영 위원 아, 그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 자료를 누가 한번…… 전문위원님이 기재부인가 하여튼 관세청하고 한번 챙겨서 주십시오, 한번 보게.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저는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냥 물어볼게요.

특히보세구역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 보고’에 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별도로 그 조항을 만들어서?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주 특수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온 건데, 혹시 아시면 담당 국장님이나 관세청에서 오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111페이지에 보시면요 1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내용을 꼭 보고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류성걸 위원 이게 결국은 공항이든지 또 시내면세점 관련된 사항 때문에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보고 배경 혹시 아시나요, 차관님?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궁금했는데 제 추측은 보세판매장이, 면세점이 특허더라고요. 옛날에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런 아주 특별히 봐주는 특허더라고. 그러니까 그 특허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관세청의 그것을 컨트롤 내지는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전에는 그랬지요.

○류성걸 위원 면세점 관련된 사항일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면세점 허가 및 이것에 대한 특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이것 보고 자체를 일반적인 자료로 그냥 받으면 되는 자료를 법률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더 골치 아프게 만든 상황인데, 일단 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하고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보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동의하고, 내용 관련해서 확인한 다음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아까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관세청까지 끝내면 안 돼요? 어디까지가 관세청……

○소위원장 김영진 전부 다요? 몇 번까지지요?

○정일영 위원 두세 개 남지 않았어요, 관세청?

○전문위원 정명호 예.

○유경준 위원 시간 약속한 대로 합시다.

○정일영 위원 한 2분 남았으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뒤의 내용이 검토의견들이 있으셔서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억원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       |       |       |       |
|-------|-------|-------|-------|
| 고 용 진 | 김 수 홍 | 김 영 진 | 김 주 영 |
| 류 성 걸 | 박 형 수 | 배 준 영 | 양 향 자 |
| 용 혜 인 | 유 경 준 | 정 일 영 |       |

#### ○청가 위원(1인)

박 홍 근

#### ○출석 전문위원

|         |       |
|---------|-------|
| 전 문 위 원 | 정 명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  |
|-----------|---|---|---|--|--|
| 기획재정부     |   |   |   |  |  |
| 제 1 차 관   | 이 | 억 | 원 |  |  |
| 세 제 실 장   | 김 | 태 | 주 |  |  |
| 소득법인세정책관  | 정 | 정 | 훈 |  |  |
| 재산소비세정책관  | 박 | 금 | 철 |  |  |
| 관 세 정 책 관 | 김 | 재 | 신 |  |  |
| 조세및고용보험소득 | 이 | 용 | 주 |  |  |
| 정보연계추진단장  |   |   |   |  |  |
| 관세청       |   |   |   |  |  |
| 통 관 국 장   | 서 | 재 | 용 |  |  |
| 심 사 국 장   | 이 | 종 | 욱 |  |  |